

**○○교육지원청 개최 학교스포츠클럽대회
참가선수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**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5나 ○○○○○○	사건유형	손해배상
원고	○○○	피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2015. 12. 1.	비고	
사건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3년 당시 ○○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△△은 13.7.21. 2013. ○○교육지원청이 개최한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학교 대표선수로 출전 중 상대선수와 충돌하여 다친 사고로 비장 및 콩팥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음. - 대회 현장에는 의사 및 응급차도 대기하고 있지 않았고, 사고 발생 당시 환자를 바로 병원에 이송 조치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119를 호출하는 등 선수 보호와 안전에 소홀한 책임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소제기. 		
주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고는 원고에게 1,000,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. 1. 14.부터 2015. 12. 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/2씩 부담한다. 		
청구취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고는 원고에게 4,144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 		
판결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축구 경기는 경기 도중 선수들 간 몸싸움, 충돌 등으로 인하여 출전 선수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들것을 비롯한 응급의료용품을 사전에 구비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으로 교육감에게 치료비의 30% 배상 책임(치료비는 학교안전 공제회비에서 기 지급한바 손해 없음)과,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. 		